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7. 20 선고 2021가합205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2나13986 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7. 20 선고 2021가합20558 판결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민호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훈진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7. 1.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원부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2015. 8. 13. 접수 제212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7. 1. 31.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2015. 8. 13. 접수 제212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7. 1.경 신탁계약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18019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C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E 주식회사'였고 그 후 2014. 9. 2. 최종적으로 'C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이하 편의상 'C'이라고 한다)는 2011. 12. 8.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인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8차전9678), 위 법원이 2018. 3. 26. 지급명령을 하여 2018. 6. 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의 신탁계약 및 신탁변경계약 체결

1) C은 2015. 8. 13. 피고(당시 상호는 'F 주식회사'였고 그 후 2019. 12. 30.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2015. 8. 13. 접수 제21203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등기부에 이 사건 신탁계약과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등재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계약]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갑(C, 이하 같음)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피고, 이하 같음)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갑의 채무불이행 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계약기간은 “별지1”의 1과 같이 하며, 신탁기간 만료 전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지1”의 2와 같이 한다.

제4조(신탁원본)

신탁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을이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제11조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신탁수익)

신탁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별지1”의 3)간의 여신 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단, “별지1”의 4를 최고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갑이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의 범위는 갑과 우선수익자간의 보증계약, 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의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이하 생략)

제2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제24조에 의한 해지
2. 신탁기간 종료 및 갑과 우선수익자 간의 거래관계의 종료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반환
3. 제18조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4. 신탁부동산의 멸실,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약사항]

제1조(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채무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③ “위탁자”라 함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주채무자”라 함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우선수익자와 여신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여신을 공여받는 자를 말한다.

제7조(우선수익자)

① 본 신탁계약에 있어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대한 우선수익금액은 우선수익자가 올에
게 요청한 실채무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며, 올은 이 금
액을 수익권증서에 기재하여 우선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1순위 우선수익자

가. 우선수익금액 : 5,720,000,000원

나. 상호 : G조합 (이하 생략)

제9조(신탁기간)

① 기본계약 제2조와 같이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간의 채무(대여금 원리금,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미지급 공사비, 공사비 연체이자 포함)의 상황이 완료되는 경우 또는 동 기간 내 처분
이 실행되어 정산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별지1

1. 신탁기간 : 본 신탁계약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일까지

2. 수익자

1순위(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 : G조합

위탁자(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 C

3. 주채무자 : C

4.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제1순위 : 5,720,000,000원

2) C은 2016. 2.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별지1의 '2. 수익자' 부분에 2순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H를 추가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원부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신탁원본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3) C은 2017. 1.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별지1의 '3. 주채무자' 부분의 'C'을 'I'으로,
'4.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부분의 '5,720,000,000원'을 '6,612,0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원부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신탁원본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서에는 원고를 비롯하여 H, J,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N이 2순위 우선수익자로 표시되어 있고, 이들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7. 1. 31.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내용을 잘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의 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31.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거나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의 이익 흠결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에는 원고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C의 수익권 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우선수익자 지위를 얻었다고 하여 달리 볼 근거가 없다(원고가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채권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이 체결될 당시 C에 대하여 1,580,087,671원(= 원금 780,000,000원 + 78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7. 1.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00,087,671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에 의하여 2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얻었으나, 원고에 대한 수익권증서 발급금액은 780,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우선수익권 범위 밖에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 지위를

포기 내지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도 2022. 2. 24.자 준비서면 2.1)항에서 C이 더 이상 수익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설령 C이 여전히 수익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6인이 우선수익자로 추가됨으로써 C의 수익권이 이전보다 후순위가 된 점(이 사건 신탁계약 기본계약 제7조 제3항 참조), 이에 따라 C의 책임재산 및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따라서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은 1순위 우선수익자인 G조합에 대한 C의 대출금 채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에도 제3자인 O의 G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외형상 체결된 사해신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위 계약의 내용 즉, C이 수익자 지위를 포기 내지 처분하거나 2순위 우선수익자를 추가한 부분이 무효가 될 뿐이므로, 원고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에 관하여 마친 신탁원본 기재사항 변경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 체결 전에 이미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C은 2017. 1.경 1순위 우선수익자인 G조합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신탁계약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원고는 C을 대위하여 이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이 사건 신탁계약 기본계약 제1조에 ‘이 신탁은 C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G조합에 대한 채무가 2017. 1. 31. 전액 변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조합은 2017. 1. 26. I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2017. 1. 31. I에게 4,74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C도 담보제공자로서 위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대출금 중 4,431,286,530원으로 C의 G조합에 대한 채무가 전액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 기본계약 제2조는 신탁기간 만료 전에 C과 피고가 협의하여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기본계약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C이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하고, C이 담보제공자로서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을 위 규정에서 정한 담보설정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특약사항 제9조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간의 채무의 상환이 완료되면 신탁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C에서 I으로 변경되었으므로, C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간의 채무가 상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매경, 판사 이지웅, 판사 송인석

별지목록

1. 충청남도 공주시 [] 대 2766㎡	
2.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팔공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2층 []호 81.4441㎡	3.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팔공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2층 []호 84.9581㎡
4.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팔공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2층 []호 84.9581㎡	5.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팔공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2층 []호 84.9547㎡
6.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팔공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2층 []호 84.9581㎡	7.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팔공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2층 []호 84.9581㎡
8.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팔공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3층 []호 84.4441㎡	9.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팔공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3층 []호 84.9581㎡

10.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3층 []호 84,9581㎡	11.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3층 []호 84,9647㎡
12.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3층 []호 84,9581㎡	13.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3층 []호 84,9581㎡
14.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4층 []호 81,4441㎡	15.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4층 []호 84,9581㎡
16.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4층 []호 84,9581㎡	17.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4층 []호 84,9647㎡
18.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4층 []호 84,9581㎡	19.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4층 []호 84,9581㎡

20.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5층 []호 81.4441㎡	21.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5층 []호 84.9581㎡
22.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5층 []호 84.9581㎡	23.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5층 []호 84.9647㎡
24.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5층 []호 84.9581㎡	25.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5층 []호 84.9581㎡
26.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6층 []호 81.4441㎡	27.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6층 []호 84.9581㎡
28.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6층 []호 84.9581㎡	29.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6층 []호 84.9647㎡

30.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면 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6층 □호 84.9581㎡	31.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면 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6층 □호 84.9581㎡
32.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면 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7층 □호 84.9581㎡	33.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면 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7층 □호 84.9581㎡
34.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면 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7층 □호 84.9547㎡	35.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면 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7층 □호 84.9581㎡
36.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면 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7층 □호 84.9581㎡	37.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면 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8층 □호 84.9581㎡
38.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면 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8층 □호 84.9581㎡	39.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면 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8층 □호 84.9547㎡

40.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8층 []호 84.9581㎡	41.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8층 []호 84.9581㎡
42.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9층 []호 84.9581㎡	43.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9층 []호 84.9581㎡
44.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10층 []호 84.9581㎡	45.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공주시 [] [] [] [] []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면 적 10층 []호 84.9581㎡

이 상

